

「평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년 1월 5일, 이창열 의원 발의
- 회부일자: 2024년 1월 9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4년 1월 9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이창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우리 군 결산검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, 수당 지급을 현실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결산검사 위원 ‘5명’ → ‘5명 이상 7명 이내’ 로 확대(안 제2조)
- 결산검사 추천적격자로 ‘재무관리 전문가’ 포함(안 제4조)
- 위원의 수당 증액(안 [별표])
- (현행) 10만원 → (개정) 20만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.

2.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[붙임 1]

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24. 1. 9.)

「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(전문위원 김 영 옥)

「평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이창열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1. 5.
- 회부일자 : 2024. 1. 9.

2. 제안이유

- 우리 군 결산검사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고, 수당 지급을 현실화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결산검사 위원 ‘5명’ → ‘5명 이상 7명 이내’ 로 확대(안 제2조)
- 결산검사 추천적격자로 ‘재무관리 전문가’ 포함(안 제4조)
- 위원회 수당 증액(안 [별표])
 - (현행) 10만원 → (개정) 20만원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¹⁾에서 ‘결산검사위원의 선임’에 관하여 위임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.

나. 입법의 취지

- 본 조례안은 우리 군 결산 검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사 업무에 합당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재정 감독의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2조(위원의 수) 중 검사위원의 수를 [현행] 5명(정수) 에서 [개정] 5명에서 7명 이내(범위)로 수정하여 결산 검사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폭넓은 위원 선임을 지원하고자 함.

1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(이하 “검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수는 시·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
- 안 제4조(추천적격 및 결격)에서는 위원 추천의 자격으로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여 결산 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.
- 안 별표에서 지급 수당을 [현행] 10만원 에서 [개정]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본업을 차치하고 결산 검사에 종사하는 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우리 군 예산 결산 검사의 내실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의 수권 범위 내에서 규정되었으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[붙임 2]

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이 창 열 의원

평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창열 의원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222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: 2024년 1월 5일

발 의 자: 이창열 의원

찬 성 자: 심현정, 김성기, 이은미 의원

1. 제안이유

우리군 결산검사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고, 수당지급을 현실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결산검사 위원 '5명' → '5명 이상 7명 이내'로 확대(안 제2조관련)

나. 결산검사 추천적격자로 재무관리 전문가 포함(안 제4조관련)

다. 수당 증액(10만원 → 20만원) (안 [별표] 관련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입법예고 : 2023. 12. 14. ~ 2024. 1. 3.(20일간), 의견 없음.

라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3. 12. 7.~ 2023. 12. 14. 의견 없음.

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정수)”를 “(위원의 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정수는 5명으”를 “수는 5명에서 7명 이내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4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제1호 및 제2호”를 “제1호부터 제3호까지”로 한다.

3. 공인회계사·세무사·대학교수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

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

별표의 수당 금액란 중 “100,000”을 “200,00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(제11조 관련)

| 구 분 | 금 액 | 비 고 |
|-----|---|-----|
| 수 당 | 일당 금 <u>200,000</u> 원 | |
| 여 비 |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“별표 5”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군의원이 아닌 의원은 군의원에 준한다. | |

【관계법령】

지방자치법

- 제150조(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

- 제83조(감사위원의 선임)** ① 법 제150조 제1항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감사위원(이하 "감사위원"이라 한다)의 수는 시·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②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감사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(常勤)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[별표]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 상 수당금액을 일당 금100,000원에서 금200,000원으로 인상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의 경우

4. 작성자

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|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 |
| 연락처 | (033) 330 - 2504 |